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 . . .
발 의 자	양진오 의원 외 6명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

발 의 자 : 양진오 · 김재우 · 김춘남 · 송용자
신문식 · 안주찬 · 홍난이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- 가. 저출생 ·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여건 조성에 기여코자 함.
- 나. 학생들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되어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, “일반용누진제” 적용으로 지역교육환경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감대책이 필요하며,
- 다.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감면사유 발생 시 대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대상 추가 신설(안 제41조제1항제9호~제11호)

-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수도법 시행령」,

「초·중등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지원의 기준에 관하여는”을 “지원기준은”으로 한다.

9.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

10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
11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1조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 (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. 1. ~ 8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 및 지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	제41조 (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</u> 10. <u>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</u> 11. <u>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지원기준은</u>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「수도법 시행령」

제53조의2(수도요금 감면) ① 법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교육시설·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
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19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 상수도요금을 지원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종전 일반용 5단계 누진 요금제에서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최저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세입 감소
- 공익상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감면시 세입 감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19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4,100세대에 매월 가정용 1단계 요금 10톤에 해당하는 4,300원을 지원
- 학교 수 95개 학교(초 48, 중 27, 고 20)에 대한 일반용 최저요율(1단계) 적용시 감소액을 추계
- 추계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추계함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다자녀가구 4,100세대에 매월 4,300원 지원시 5년간 971백만원 소요

[표1] 연도별 지원금액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원금액	123	212	212	212	212	971

- 95개 학교에 일반용 최저요율 적용시 5년간 1,192백만원 세입 감소

[표2] 연도별 세입 감소액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 감소액	△ 152	△ 260	△ 260	△ 260	△ 260	△ 1,192
정상 부과시	473	810	810	810	810	3,713
1단계 적용시	321	550	550	550	550	2,521

- 공익상 특별히 감면사유가 발생될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미정으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4. 재원조달 방안 (다자녀지원, 학교수도요금 감면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275	472	472	472	472	2,163
민 간						
기 타						
합 계	275	472	472	472	472	2,163

5. 부대의견

- 기초생활수급자(생활안정과), 국가유공자(복지정책과), 모범음식점(위생과) 등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후 상수도요금을 지원중이며, 다자녀가구도 관련 부서에서 일반회계 예산편성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.

(지원대상자가 공동주택(아파트),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요금감면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)

- 학교수도요금 및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직접감면은 가능하나,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감면된 금액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절실함.

(미지원시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있음)

6. 작성자 :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진현우 (054-480-443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지원 (가정용 10톤, 1톤당 430원)

- 매월 4,100가구 $\times$ 4,300원 = 17,630천원/1월

⇒ 연간 지원금액 : 17,630천원/1월 $\times$ 12월 = 211,560천원

2. 학교수도요금 감면 (일반용 5단계 → 일반용 1단계 변경시)

- 일반용 5단계 부과시 : 67,500천원/1월

- 일반용 1단계 부과시 : 45,833천원/1월

⇒ 요금 감소액 : 21,667천원/1월 $\times$ 12월 = 260,004천원

3. 상수도요금 전체에 대하여 20% 감면시 811,889천원/1월 세입 감소

- 상수도부과액 4,059,446천원/1월 $\times$ 20% = 811,889천원/1월